

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4. 6. 24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4년 6월 16일

. 회부일자 : 1994년 6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3 회 임시회

.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4. 6. 24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무국장 유의재)

가. 제안이유

- 향토음식에 대한 관광상품으로서 가치를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기능은 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및 해제, 도지정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발굴, 관리 및 활용에 관한사항, 기타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
- 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로 하되, 위원장을 부지사로하며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이는 지역생산품을 주원료로한 향토음식에 대해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증대시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
지명도가 높고 맛이 좋은 향토음식의 기능 보유자를 지정 관리운영하는 조례를 신설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서는

-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위원회를 두고 2년의 임기와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도향토음식 기능 보유자 지정 및 해제와 도지정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의 발굴 및 관리, 활용 등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조정 하는등의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

본 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로 충북의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아울러 지방재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 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· 충청북도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조례(안)